

#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기술자문 국외출장 계획

## 1. 목 적

- 몽골 노동사회보장부의 요청(2018. 11. 21,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차관 서한)에 따라 2018. 12월 개최하는 분과별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참석하여
  -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체계, 자격인정에 관한 발표를 실시로 몽골 중장기 산업안전보건계획 이행을 위한 시사점 도출 기회 제공

## 2. 출장 개요

- 출장기간 : 2018. 12. 11(화) ~ 12. 14(금) 【3박 4일】
- 출 장 자 : 2명
  -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신인재 원장
  -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건설경영교육부 변종한 부교수
- 출 장 지 : 몽골 울란바토르

## 3. 주요 일정

일 정	내 용
'18. 12. 11(화)	○ 이동(인천 → 울란바토르)
'18. 12. 12(수)	○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업무협의(차관 면담 등)
'18. 12. 13(목)	○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참가·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발전전략</li><li>- 산업안전보건 교육체계, 자격인정 발표</li><li>- 관련 자문 실시</li></ul>
'18. 12. 14(금)	○ 이동(울란바토르 → 인천)

※ 분야별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프로그램 : 【덧붙임1】

## 4. 주요 수행사항

-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업무협의(차관 및 관계자 면담)
  - 일 시 : 2018. 12. 12(수) 10:00 ~ 16:00
  - 장 소 :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회의실
  - 주요내용
    - 몽골 산업안전보건 중장기계획 이행 관련 의견 교환 및 자문
    - 양 기관 간 향후 협력방안 협의
-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분과별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참가
  - 일 시 : 2018. 12. 13(목) 09:00 ~ 17:10
  - 장 소 : 몽골 울란바토르 회의장
  - 수행사항
    -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발전계획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체계 발표
    - 관련 질의응답 및 기술자문

## 5. 행정사항

- 동 출장은 ‘18년도 국제협력센터 사업계획 중 “국제세미나 참석과 국외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한 글로벌 기술협력 및 재해예방 역량 강화” 사업으로 추진
- 국외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「공직자 선물신고제도」에 따라 처리 ※ 선물신고안내문 : 【덧붙임2】
-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
- 공항이동을 위한 국내 운임은 국내여비로 처리
- 항공마일리지 부족으로 인한 마일리지 사용 불가
- 출장자는 출발전 ‘ERP/공통/국외출장 신청 및 조회’에 출장정보 입력, 복귀 후 마일리지 적립내용 신고 철저

【덧붙임1】

## 분야별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프로그램

일 자	시 간	프로그램	비 고
12.13.(목)	09:00 ~ 09:10	개회식 (환영사 : 차관, 신인재 원장)	
	09:10 ~ 09:40	산업안전보건 국가 정책	
	09:40 ~ 10:00	산업안전보건 국가 프로그램 이행	
	10:00 ~ 10:20	산업재해 및 급성 중독 현실태	
	10:20 ~ 10:35	Coffee Break	
	10:35 ~ 10:55	산업재해 및 직업병 관련 연금 법 개정	
	10:55 ~ 11:55	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계획	신인재 원장
	11:55 ~ 12:30	질의응답 및 토론	
	12:30 ~ 13:30	중식	
	13:30 ~ 13:50	몽골의 산업안전보건 교육	
	13:50 ~ 14:50	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체계	신인재 원장
	14:50 ~ 15:20	산업안전보건 전문 자격에 관한 규정(안)	
	15:20 ~ 15:40	Coffee Break	
	15:40 ~ 16:00	질의응답	
	16:00 ~ 16:20	산업안전보건 감시체계, 방법, 원칙 및 방향	
	16:20 ~ 16:50	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, 위생 및 생식 관련 문제	
	16:50 ~ 17:10	질의응답	
	17:10 ~	요약, 종료	

【덧붙임2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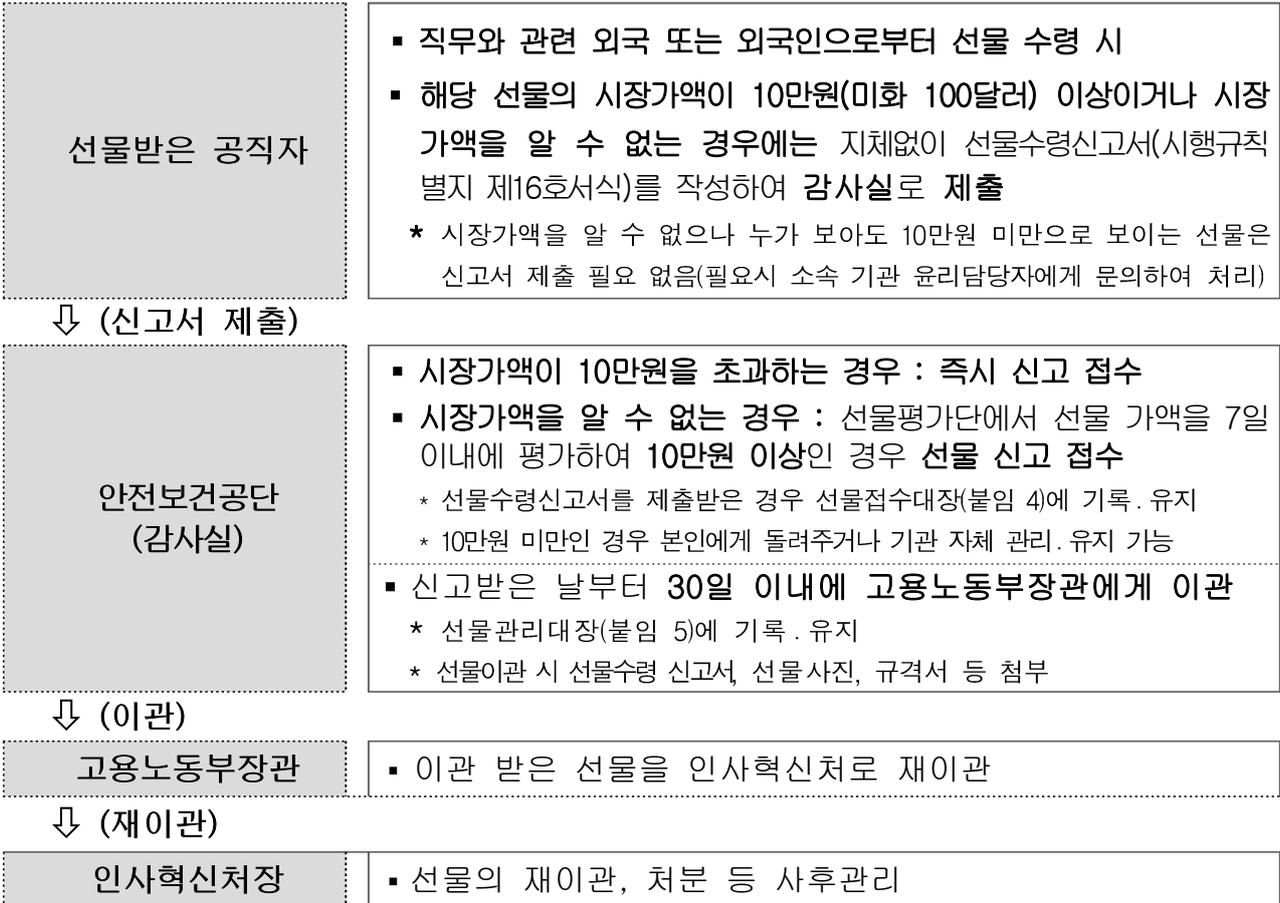
# 선물신고 안내문

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·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도개요

- 근거 : 공직자윤리법 제15조~제16조, 동법시행령 제28조~제30조
- 신고의무자 :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(가족포함)
- 대상 선물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선물

□ 신고요령(절차)



□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